

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1. 6. 22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354호로 2021년 6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경관법」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심의 시 공동위원회 구성이
재량사항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
조례」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」 별표1 구분 제4호의 분류란
중 “다중이용시설(공동위원회)”를 “다중이용시설”로 변경
나.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시 공동위원회를 반드시 별도
구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해소하여 공동위원회
별도 구성이 재량사항임을 명확화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경관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(2021. 4. 22. ~ 5. 12./ 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건은 「경관법」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심의 시 공동위원회 구성이 재량사항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임.

○ 조례안의 내용은

- 별표1 구분 제4호의 분류란 중 “다중이용시설(공동위원회)”를 “다중이용시설”로 변경하였음.

○ 상위법인 「경관법」에서는 경관심의 시 공동위원회 별도 구성이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. 본 조례안은 「경관법」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중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동위원회 별도 구성이 재량사항임을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범위에서 규정되어 있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